■ 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51-287.
http://doi.org/10.17948/kcs.2019..85.251

高麗末・朝鮮初 權漢功에 대한 世評의 變化*

이진한(李鎭漢)**

목 차

1. 머리말
2. 원간섭기 권한공에 대한 세평
3. 고려말 권한공에 대한 세평
4. 조선초 권한공의 세평과 그 변화
5. 맺음말

국문초록

권한공은 충렬왕부터 충정왕대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쳐 정치적으로 활약한 인물로서, 조선 문종대 간행된 『고려사』의 간신전에 포함되면서 지금까지도 국왕에게 불충한 대표적인 간신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권한공이 정말로 간신이 될 만한 행적을 남기고 그의 후대에도 세상에서 그를 간신으로 보았는지를 검토하였더니 조선 세종초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권한공은 충숙왕대에 유배되었다가 사면되고 나서 최고 관직을 지냈고, 국가 원로로서 대우를 받았다. 또한 사후에도 권한공은 존경받는 인물로서 이색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영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t Korea University in 2018).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향을 미쳤으며, 권단의 문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사로 알려졌다. 권한공의 내외손자녀와 그 배우자들로 구성된 '4촌회'는 자랑스러운 조상인 권한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혈족 모임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태조는 권한공을 충숙왕대 뛰어난 文士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세종대의 각종 「지리지」에서는 본관인 안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권한공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종대 후반 이후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사서들이 편찬되면서 권한공이 임금을 배신한 인물이 되고, 마침내 『고려사』 간신전에 포함되면서 간신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건대, 권한공은 적어도 고려말 조선 세종초까지는 그다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나쁜 인물은 아니었지만, 『고려사』 편찬자의 역사관에 따라 간신에 해당되는 인물로 선정되고 그와 같은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권한공의 세평은 당대에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인물에서 '간신이 되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배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주제어: 고려말(高麗末), 조선초(朝鮮初), 권한공(權漢功), 세평(世評), 안동 권씨(安東權氏), 간신(姦臣),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 머리말

권한공은 충렬왕대부터 충정왕대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충렬왕대에 과거에 급제하고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권세를 누렸으나, 충숙왕이 즉위하고 나서 前王의 親黨이라고 하여 유배되었다. 뒤에 충선왕과 충숙왕이 화해하자 권한공은 사면되었고, 충숙왕이 복위하였을 때 최고 관직인 우정승에 이르렀으며, 벼슬에서 물러난 뒤 국가 원로로서 정사에 참여하다가 충정왕 원년에 예천부원군으로서 졸하였다.[1] 그는 최고 지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권한공계'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후손들이 번창하여 당대에 가장 유력한 世族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權溥와 더불어 고려후기 안동 권씨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2]

---

1) 권한공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張東翼, 「權漢功의 生涯와 行蹟」, 『大丘史學』 제104호, 대구사학회, 2011a; 「李齊賢, 權漢功 그리고 朱德潤—高麗後期 性理學 收容期의 人物에 대한 새로운 理解—」, 『退溪學과 儒敎文化』 제49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1b.

2) 안동권씨는 12세기초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여러 派가 이족에서 차례로 士族化하였다. 李樹健, 「高麗後期 「土姓」 硏究」, 『東洋文化』 제21·22합집, 대구대 동양문화연구소, 1981; 『韓國中世社會史硏究』,

그러나 권한공은 조선초 기전체 형식으로 편찬된『高麗史』열전의 간신전에 입전되었고,『東國通鑑』,『麗史提綱』,『東史綱目』등의 사서에서는 후대로 갈수록 인물평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평이 쌓여가서 不忠한 자의 전형이 되어 버렸다.[3] 여기서 중요한 것은『高麗史』와『高麗史節要』의 권한공에 관한 내용인데, 그 이후에 편찬된『동국통감』등은 거의 양 사서의 기록을 다시 옮겨놓고 자신의 유교적 사관에 입각한 按說을 더하여 그의 행적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간신전 서문에 의하면, 간신은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을 좀먹고 나라를 패망하게 만드는 자이며,[4] 亂臣賊子 및 지역에 할거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킨 자인 반역[5]보다 덜 나빴지만, 후세에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다. 그래서인지 간신전의 찬자는 권한공전에서 권한공이 충선왕의 총애를 믿고 전횡을 부렸던 일, 충숙왕이 원에 있을 때 심왕 옹립을 주모한 일, 충혜왕이 원에 끌려간 뒤 충혜왕을 구원하기 위해 국가의 원로들이 모여 논의하였을 때 권한공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지금의 상황은 충혜왕이 자초한 일이라며 반대하였던 일들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런데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권한공이 충선왕대 권신으로 활동하고 충숙왕대 유배된 적이 있지만, 사면된 이후 최고위직에 오르고 천수를 누렸으며 다수의 후손들이 크게 활약하여 계보를 이룰 정도가 되었는데도『高麗史』간신전에 들어간 것은 사서의 평가가 당대 및 후대의 평가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권한공이 살았던 시기와 사후인 여말선초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특히, 권한공을 '간신답게' 만들어놓은

一潮閣, 1984, 306면. 대표적으로는 權溥系・權漢功・權漢有系로 나뉘며 특히 권부계와 권한공계의 내외손들이 재상으로 출세하면서 世族이 되었다. 고려후기 안동권씨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박용운,「安東權氏의 사례를 통해본 高麗 社會의 일단면—'成化譜'를 참고로 하여—」,『歷史敎育』제95호, 역사교육연구회, 2005;『고려시기 역사의 몇가지 문제』, 일지사, 2010; 閔賢九,『高麗後期 安東權氏 家門의 展開—元干涉期의 政治的 位相을 중심으로—」,『道山學報』제5호, 도산학회, 1996.

3) 이진한,「朝鮮時代 史書의 權漢功에 대한 서술과『一齋先生實紀』의 편찬」,『韓國史學報』제74호, 고려사학회, 2019.

4)「姦臣傳序」,『高麗史』권125.

5)「叛逆傳序」,『高麗史』권127.

『高麗史』·『高麗史節要』와의 관련성이 적은 조선초의 지리지와 문집 및 묘지명 등의 가계기록류에 나타난 권한공에 대한 세평을 꼼꼼히 살펴서 실제 '권한공'을 복원하고 재조명해보려고 한다. 비록 사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권한공이 『高麗史』 간신전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인물의 선정이나 기록의 취사선택에 있어 『高麗史』 열전의 편찬자가 객관성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원간섭기 권한공에 대한 세평

권한공이 『高麗史』 간신전에 들어간 이후 편찬된 조선시대의 사서를 보건대, 후대로 갈수록 그에 대한 평가가 더욱 나빠져가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충군애국이라는 유교적 기준이 아니라 원간섭기의 정치세력과 정국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권한공 등의 행적을 재평가하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충숙왕대 권한공이 주도했다고 하는 심왕 옹립 사건에 대해서, 조적·채하중·유청신·오잠 등은 충숙왕 정권에 불만을 품고 정치적 재기를 노리면서 충숙왕대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권한공·채홍철·이광봉 등과 함께 元 英宗의 총애를 받던 심왕 고를 추대하였다고 하였다.[6] 그리고 심왕 옹립과 입성책동은 충선왕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일으킨 것으로 권한공과 충선왕의 의도를 충실하게 대변한 것이지 충숙왕과의 사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소위 '심왕파'는 심왕 고가 원에서 영종의 총애를 받고 있으므로 그를 고려국왕으로 옹립하여 충선왕대와 같이 안정된 고려·원 관계가 재현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다.[7]

또한 충혜왕이 원의 사신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을 때 救命運動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충혜왕의 왕권 강

6) 金塘澤, 「高麗 忠肅王代의 瀋王 옹립 운동」, 『歷史學硏究』 제12호, 전남사학회, 1993; 『元干涉下의 高麗政治史』, 一潮閣, 1998, 86-88면; 鄭仙姬, 「高麗 忠肅王代 政治勢力의 性格」, 『史學硏究』 제42호, 한국사학회, 1990, 22-23면.

7) 李益柱, 「14세기 전반 高麗·元關係와 政治勢力 動向—忠肅王代의 瀋王擁立運動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9호, 한국중세사학회, 2000, 160-166면.

화책에 대해 많은 관리들이 불만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권한공이 "왕이 무도해서 천자가 그를 베는데 어찌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고, 李淩幹은 "황제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는 것이다.[8] 그와 더불어 後世 사람들에 의해 그의 행동거지가 비판을 받은 것은 충혜왕이 잡혀서 유배되는 과정에서 제왕이 처한 불행에 대해 냉소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었지만, 그의 현실 인식은 당시 고려 지배층들이 지니고 있던 원제국 지배 체제에 안주하려는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9] 1343년 충혜왕이 원에 체포되고 강서행성에 유배되었을 때, 재상과 국로들이 회의를 하고 원에 상서하여 왕의 죄를 사면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권한공은 전 정승 姜融・李淩幹 등과 함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충혜왕의 무도함을 말하여 결국 무산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君主가 곤경에 처하면 신료가 勤王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조로 삼았던 조선왕조 초기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은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0]

이상의 논의는 권한공이 간신전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고려와 원의 관계나 원간섭기의 정국 운영 등을 고려하건대 권한공의 언행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高麗史』의 편찬이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합리적인 원인을 찾는 연구도 있는데, 『高麗史』 열전에 서술된 세평은 그 편찬자의 견해가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전하는 舊錄의 내용을 이용한 것이며, 제신전에 들어가는지 간신전 또는 반역전에 수록하는지를 가르는 것은 『高麗史』 찬자의 주관이 들어갔으며, 개인의 인물평이나 국왕의 성품은 당대의 자료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11] 이 주장은 『高麗史』 열전 찬자의 입장에서 인물의 선정과 포폄에 자의성이 있었다고 해도 사서가 만들어지던 시기의 세평과 기록을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현은 심왕 고를 옹립하려는 세력을 비가 올 때 연못에서 시끄럽게 울며 싸우려고 하는 개구리에 비유하면서 '간당'으로 지칭하였고, 이러한

8) 金塘澤, 「忠惠王과 元과의 갈등」, 『歷史學報』 제142호, 역사학회, 1995; 앞의 책, 1998, 109-119면.
9) 張東翼, 앞의 글, 2011a, 96면.
10) 같은 글, 92-93면.
11) 邊太燮, 「『高麗史』의 內容分析」, 『『高麗史』의 硏究』, 三英社, 1982, 121-122면.

인식이『高麗史』편찬에 영향을 주어 "二君을 섬기려 하여 臣節을 잃은 전형으로 간신전에 입전되었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었다.[12] 심지어 간신전이나 반역전에 실려있는 인물들도 군주와의 力關係에서 간신이나 반역자가 될 수 있으나 간신전은 군주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적을 평가하였으므로 국가・민족의 입장에서 도리어 충신・의사가 될 만한 인물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13]

거의 일방적으로 불충하고 간사한 인물로 묘사하여 고려시대 간신의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로 인식했던 조선시대 사서의 편찬자들과 다르게 최근 권한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의 역할이나 언행을 유교적 관점에 따라 나쁘게만 봐서는 안되며, 원간섭기 정국 운영이나 정치세력 간의 갈등을 고려하건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역사적 해석으로서 권한공을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공과 동시대 또는 그의 사후 오래지 않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高麗史』와『高麗史節要』는 물론 문집이나 묘지명과 같은 당대의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세간의 평가—世評—를 파악할 것이다.

우선 권한공 생존 시기의 세평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여러 사서에 기록된 그의 최종 관직을 검토해보자.

A1. [충정왕 원년 9월] 戊寅日에 醴泉府院君 權漢功이 卒하였다.[14]
A2. 충정왕 원년 9월에 醴川府院君 權漢功이 卒하였다.[15]

A1은『高麗史』, A2는『高麗史節要』의 權漢功 卒記이다. 두 사서에서 한 인물의 죽음을 매우 짧게 기록해놓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高麗史』와『高麗史節要』의 편년 기사에 졸기가 있으면서『高麗史』열전에 포함된 경우는 320명이

12) 張東翼, 앞의 글, 2011a, 92면 각주 112).
13) 韓永愚,「《고려사》와《고려사절요》의 비교」,『朝鮮前期 史學史 硏究』, 서울대 출판부, 1981, 113면.
14)『高麗史』권37 世家 忠定王 원년 9월. "戊寅, 醴泉府院君權漢功, 卒."
15)『高麗史節要』권26 충정왕 원년 9월. "醴川府院君權漢功, 卒."이라고 하여 내용은 같지만 '泉' 대신 '川'으로 기록되었다. 권한공의 봉군호와 관련하여 '泉'과 '川'이 혼용되는 사례는 더 있지만 후자는 誤字이다.

있는데 제신전이 아니라 반역이나 폐행 등의 다른 전에 수록된 인물은 16명이며 반역전에 1명, 간신전에 5명, 嬖幸傳에 6명, 方技傳에 2명, 良吏傳에 2명 등이다. 대체로 졸기의 品評이 해당 인물을 제신전 혹은 폐행전 등에 수록할 것인지의 기준이 되었다. 졸기가 있으면서 간신전에 입전된 崔弘宰・宋玠・金元祥・권한공・曹敏修 등 가운데 최홍재를 제외하고는 일화나 포폄을 적지 않고 관직 및 이름과 함께 졸한 사실만을 기록하였던 것이다.[16] 그러므로 『高麗史』 세가 또는 『高麗史節要』에 권한공의 졸기가 남아있는 것은 그 찬자들이 권한공의 일생을 나쁘게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권한공의 졸기에 기록된 醴泉府院君이라는 직함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최종 관직이 기록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겠다.

> B1. 공은 무릇 두 번 배우자를 얻었다. 完山郡夫人 裴氏는 重大匡・完山君의 挺의 딸인데, 일찍 죽었고 자식이 없다. 辰韓國大夫人 權氏는 元朝의 朝列大夫・太子左贊善이며 [고려의] 推誠同德協贊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醴泉府院君・領藝文館事로 文坦의 시호를 받은 漢功의 딸이다. 성품이 勤儉하고 자식들을 엄하게 가르쳤으며 평소에 살면서 錦綺와 같은 비단옷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권씨가] 공보다 먼저 수년간 병을 앓으니 공이 약을 구하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세명의 아들과 다섯 명의 딸을 낳았다.[17]
>
> B2. 부인의 성은 權氏이다. (…) 원나라의 朝列大夫・太子左贊善이며 [고려의] 推誠同德協贊功臣・都僉議右政丞・醴川府院君으로 文坦의 시호를 받은 漢功의 孫女이다.[18]
>
> B3. [權]漢功은 都僉議政丞・醴泉府院君이다.[19]

B1은 이색이 지은 염제신의 묘비명으로 그의 두 번째 처인 權氏를 소개하

16) 김난옥, 「『高麗史節要』 卒記의 기재방식과 성격」, 『韓國史學報』 제48호, 고려사학회, 2012, 86-103면.
17) 李穡, 「高麗國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曲城府院君贈謚忠敬公諱公神道碑幷序」, 『牧隱集』 권15. "公凡再娶, 完山郡夫人裴氏, 重大匡, 完山君, 諱挺之女, 早亡無子, 辰韓國大夫人權氏, 元朝朝列大夫, 太子左贊善, 推誠同德協贊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醴泉府院君, 領藝文館事, 謚文坦, 諱漢功之女也. 性勤儉, 敎子嚴. 平居, 錦綺不加于身. 先公病數年, 公救藥久益勤. 生三男五女."
18) 權近, 「貞愼宅主權氏墓誌銘幷序」, 『陽村集』 권39. "夫人姓權氏. (…) 宣授朝列大夫, 太子左贊善, 推誠同德協贊功臣, 都僉議右政丞, 醴川府院君, 謚文坦公, 諱漢功之孫." 원문에 禮泉이 禮川으로 되어 있다.
19) 『成化安東權氏世譜』 天. "漢功, 都僉議政丞・醴泉府院君." 이하 『성화보』로 줄임.

면서 그녀의 아버지인 권한공의 관직을 자세히 적었다. B2는 이색의 처 권씨의 묘지명으로, 그녀의 할아버지인 권한공의 관직과 시호가 기록되어 있다. B3은 안동권씨 『성화보』의 기록으로 권한공이 都僉議政丞・醴泉府院君이었다고 하였다.

A1의 『高麗史』 세가는 말 그대로 졸기이므로 최종 관직을 적었을 것이고, B3의 『성화보』 역시 비록 높은 관직을 지냈어도 최고 관직이 아니라 죽을 때 가지고 있었던 관직을 적는 것이 보통이었다.[20] 그리고 B1・2는 개인 기록이면서 친족이 써준 것이어서 성격상 권한공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원과 고려에서 받은 높고 영예로운 관직을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B1에는 본품 관직인 도첨의우정승이 없고, B2에서는 재신이 예겸하는 領藝文館事가 없으므로 그것을 합친 推誠同德協贊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都僉議右政丞・醴泉府院君・領藝文館事가 충숙왕 복위 후 임명된 도첨의우정승 때 맡았던 권한공의 최고 관직이었을 것이다.

충숙왕이 복위한 시기에 권한공이 정승을 지낸 것은 분명하다. 1332년(충숙왕 후1) 충숙왕이 복위하면서 충혜왕의 총신들이 제거되고, 심왕과 충숙왕과의 관계가 개선되자 권한공도 채홍철 등과 함께 복귀하였으며, 1338년에 정승으로 재직하고 있었다.[21] 권한공이 정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예천군에 봉해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관직을 새롭게 제수받지 못하다가 1338년 이전에 찬성사를 지낸 것을 인정해 정승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는 권한공이 우정승이었을 때의 겸직은 알 수 없는데, B1과 B2를 통해 우정승 재직 시의 공신호・문산계・관직・봉군호・겸직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여전히 우정승이 例兼하는 중요한 관직이 들어있지 않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

20) 『성화보』에서는 권행의 내외 후손을 수록하였는데, 인물의 최고 관직이 아니라 최종 관직을 주로 적었다. 따라서 정승이나 중찬과 같은 최고 관직을 지냈어도 그 이후 치사를 하거나 봉군호를 받은 상태에서 졸하였다면 그대로 적었다. 李鎭漢, 「『成化安東權氏世譜』에 기재된 고려후기의 관직」, 『韓國史學報』 제22호, 고려사학회, 2006.

21) 『高麗史』 권35 世家 忠肅王 후7년 추7월; 「權漢功傳」 『高麗史』 권125.

C1. 이때 [권한공] 어머니의 나이가 또한 72세였습니다. 이로부터 제 마음이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제 나이 74세가 되고 또한 요행히 몸은 수상[上相]의 자리에 있었고, 손은 임시로 征東行省의 권한[省權]을 맡아서 富貴가 지극해졌으며, 어머니께서도 건강하시더니 이번에 돌아가실지 어찌 알았겠습니까.22)

C2. 그녀—權氏—의 천성이 아름답고, 福과 慶事가 함께 하였으며, 한평생 부귀하는 경우는 예부터 없었네. 과거에 이름을 올리는 아름다움은 형과 동생이 이었고, 총재 자리를 집안에서 전하여 [권씨의] 아버지와 지아비가 [총재가] 되었네.23)

C3. (…) 나—권근—의 文正公—권부—과 文坦公—권한공—에 이르러 동등한 덕망으로 함께 冢相의 지위에 있었으며, 양가의 자손이 가장 번성하고 컸다. 나는 (권씨) 부인의 族屬으로 촌수는 비록 머나 宗人이며, 또 공—이색—의 門人이다.24)

C1은 최해가 권한공을 대신하여 지은 권한공 어머니에 대한 제문의 내용이다. 최해는 자기의 아버지인 崔雲의 묘지명에서 입성책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바 있었는데, 심왕 고의 옹립을 주도한 적이 있는 권한공을 대신하여 그의 어머니 제문을 지어준 것은 최해가 보기에 권한공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25) 게다가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권한공이 74세에 上相의 자리를 차지하고 행성을 맡았는데 어머니가 강녕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22) 崔瀣, 「代權一齋祭母文」, 『拙藁千百』 권2. "是時母年又七十二, 自此私心一懼一喜, 豈知兒年七旬又四, 而且僥倖身居上相, 手假省權, 富貴之極, 而母尙康寧, 得終于此."

23) 權近, 「三韓國大夫人權氏輓詞」, 『陽村集』 권3. "天賦柔嘉福慶俱, 平生尊富古猶無, 科名世美兄連弟, 冢宰家傳父與夫. (…)"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 『양촌집』에서는 총재를 이부의 판사를 뜻하는 이판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했다.

24) 權近, 「貞愼宅主權氏墓誌銘 幷序」, 『陽村集』 권39. "及吾文正公與文坦公, 並德齊跱, 俱位冢相. 兩家子孫最蕃以大. 予於夫人, 族屬雖遠, 宗人也, 又於公門人也."

25) 최해는 아버지 최운의 묘지명에서 "지치 연간에 화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우리나라를 뒤흔들려[謀擾東社] 할 때 공경과 사대부들이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바람 앞에 풀잎처럼 쏠리고 말았으나 공—崔雲—은 이번에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진한 편, 『拙藁千百 역주』, 경인문화사, 2015, 138-139면. 나라를 뒤흔들려고 했던 것은 동쪽 사직[東社]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고려를 원의 한 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입성책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입성책동에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던 최해가 권한공의 글을 대신 써주었다는 것은 심왕 옹립 모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원 과거에 급제한 최해는 당대에 명문장가였으나 성격이 까다로웠다고 한다. 그러한 최해가 권한공을 위해 두 번이나 대신 글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서로 친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권한공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崔瀣, 「代權一齋祭母文」, 『拙藁千百』 권2; 「永州梨旨銀所陞爲縣碑」, 『拙藁千百』 권2. 이진한 편, 앞의 책, 2015, 480-488면, 548-555면.

최해는 슬픈 감정을 담아 서술하였다.

C2는 권근이 지은 염제신의 부인 권씨의 挽詞이다. 이색은 앞에서 권씨의 아들들이 잇달아 과거에 급제한 것을 칭송하고, 뒤에서 권씨의 아버지 권한공에 이어 권씨의 지아비인 염제신이 총재가 되었던 사실을 적었다. C3은 권근이 지은 이색의 부인이자 권한공의 손녀인 권씨묘지명인데 권한공이 冢相의 지위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C1에서 권한공이 '上相'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C2에서는 그가 '冢宰'였다고 하였다. C3에서 찬자인 권근은 권부에게 '吾'를 넣어 자신이 그의 직계임을 밝히면서 권부와 권한공이 모두 '冢相'을 지냈다고 하였다. C1-3에서 권한공의 지위를 나타내는 '上相', '冢宰', '冢相' 등은 수상과 같이 고려 관원 가운데 최고위직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권부가 1320년 4월에 첨의정승에 임명되었고, 권부 본인의 묘지명에 첨의정승・판선부사를, 『高麗史』 권부전에는 첨의정승・판총부사를 지냈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26] 알 수 있다. 문제는 권부가 첨의정승과 더불어 수상이 임명되는 판선부사와 판총부사를 겸했던 데 비해, 권한공은 첨의정승을 지냈다는 기록만이 있다는 것이다.

권한공을 지칭한 '상상', '총재', '총상' 가운데 총재는 반차 1위의 재신으로 수상과 같은 뜻이고, 上相도 가장 높은 재상이란 의미로 중찬이나 영문하부사를 지칭하였다.[27] 총상은 총재와 上相의 합칭어로 총재와 통하는 것이며, 권부가 판선부사 또는 판총부사를 역임한 것이 그 사례이다. 그리고 尹碩은 권한공이 도첨의정승으로 재직하던 때와 가까운 시기인 1339년(충혜왕 후1)에 도첨의우정승・판전리사사였다.[28]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대 권한공도 도첨의우정

26) 朴龍雲, 「高麗時代의 6部判事制에 대한 考察」, 『고려시대연구』 I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a; 『高麗時代 尙書省 硏究』, 景仁文化社, 2000b, 134면.

27) 조위묘지명에서 조인규가 첨의중찬에 이르고 평강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모두 '上相之位'에 있었다고 하였다. 金龍善 편, 「趙瑋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제5판), 한림대 출판부, 2012, 543면. 또 다른 사례로서는 1388년 8월에 창왕이 즉위한 후 洪永通을 영문하부사로 삼자, 國人들이 "저렇게 탐람한 자가 정월의 주살을 면하고, 이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함에 쫓겨나지 않고 다시 上相의 자리에 오르니, 참 복있는 사람이다"고 하였다고 한다. 『高麗史節要』 권33 창왕 즉위년 8월. 조인규의 첨의중찬을 상상으로, 홍영통의 영문하부사를 각각 上相으로 표현한 것은 재신 가운데서도 최고 지위였기 때문일 것이다.

28) 박용운, 앞의 글, 2000a, 135면.

승으로서 수상이 맡았던 판전리사사를 겸하였을 것이다.

다만, 원간섭기와 고려말기에는 국왕의 측근세력・폐행세력의 발호가 심하였으므로 판이부사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판이부사의 수상으로서 역할 가운데 특히 인사권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 판이부사의 발령사항은 『高麗史』, 『高麗史節要』에 실리지 않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도)첨의중찬・정승・시중이 그것을 겸하지 않는 예도 있었는데,[29] 권한공도 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권한공이 최고 관직을 제수받은 것은 재상의 우두머리로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권한공이 정승직을 그만둔 뒤에도 그에 대한 정치적 대우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관인이 관직에 종사하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69세까지이고, 70세에 치사해서 현직의 절반에 해당되는 녹봉을 치사록으로 받았다.[30] 그런데, 권한공은 70세가 넘어서도 치사가 아니라 봉군직을 제수받고 있었다. 권한공은 정승에서 물러난 후 치사했다거나 치사직에 관한 기록이 없는 대신, 1341년(충혜왕 후2) 3월과[31] 1343년 12월에 각각 예천군으로 있었으며,[32] 1349년에 예천부원군으로 졸하였다. 그와 더불어 C1의 74세에 上相으로 '부귀의 극'에 있었다는 기사도 있다. 이것은 권한공이 70세에 치사를 하지 않고, 봉군호를 받고 국가 원로로서 현직처럼 활동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혜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로 중에서도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우대였다.

본래 고려후기에 운영된 봉군제의 경우, 다른 관직을 겸하지 않는 봉군에 대한 녹봉은 없었으며, 재신을 지낸 자에 한해서는 봉군이 되면 재신의 녹과를 주도록 특혜를 받았다.[33] 이 규정을 준용하건대, 민천사 회의에 참여한

29) 박용운, 「고려시대의 門下侍中에 대한 검토」, 『震檀學報』 제85호, 진단학회, 1998; 『高麗時代 中書門下省宰臣 硏究』, 一志社, 2000c, 67-70면, 87-88면, 108면.

30) 고려시대에 치사와 치사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李弼相, 「麗朝致仕考」, 『惠庵 柳洪烈博士 華甲紀念論叢』, 探求堂, 1971; 이진한, 「高麗前期 致仕制의 운영과 官人의 引年致仕」, 『民族文化硏究』 제58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31) 『高麗史』 권36 世家 忠惠王 후2년 3월; 『高麗史節要』 권25 충혜왕 후2년 3월.

32) 『高麗史節要』 권25 忠惠王 후4년 12월.

‘전’ 정승인 강장과 이능간은 녹봉을 받을 수 없지만, 예천군 권한공은 재신의 녹봉을 받았던 것이다. 권한공, 강장, 이능간 등이 모두 최고위직인 정승을 지내고 치사를 했어도, 권한공은 강장 등에 비해 우대받았음이 분명하다.

권한공은 70세가 넘어서 ‘致仕’한 재상이 아니라 봉군으로 있었던 것이 특별한 혜택이었음은 권한공 사후 오래지 않아 있었던 이제현의 치사 후 봉군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이제현은 1352년(공민왕 1) 10월에 조일신의 난이 평정된 뒤 우정승이 되었으나 1353년 정월에 사직하였다. 그는 그해 5월에 부원군으로 지공거가 되었고, 1354년 12월에 다시 우정승이 되었지만, 그 다음해 사직하였다. 그의 나이 70세가 되자 치사되어야 함에도 김해후에 봉해졌고, 1355년 12월에 현직인 문하시중을 제수받았다. 1356년 5월에 이제현은 國制에 封君과 致仕는 頒祿에 차등이 있었는데, 이미 늙어서도 오히려 이러한 많은 녹봉을 받는 것이 의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本職—直前의 관직인 문하시중—으로서 致仕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민왕이 허락하였다. 그러나 本職으로 致仕하는 것은 大臣을 공경하는 뜻이 아니라는 조정의 여론에 따라 1362년 또 한번 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제현은 15세에 등과하여 이름이 한세상을 덮고, 조정에 선 이래 오로지 문서를 받들어 藝文春秋館의 外制를 역임하였으며, 그가 원에 표를 올려 충목왕 사후에 충정왕이 아닌 江陵大君—공민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던 충정왕 재위 3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兩府와 封君에 이르고, 70세가 넘어서도 관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34] 이제현이 치사를 청한 데 대해 조정이 대신을 공경하는 뜻으로 계림부원군으로 봉해준 것은 이제현을 ‘元老 大臣’으로 우대하여 현직으로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현의 사례에 비추어보건대, 권한공도 거의 이제현에 비슷한 대우를 받은 것 같다. 권한공이 우정승을 지낸 이후 官歷은 알 수 없으나, 禮泉君으로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고, 70세가 넘어 죽을 때도 치사가 아닌

33) 『高麗史』 권80 食貨志3 祿俸. “[禹王 元年] 十二月, 憲司上疏略曰, (…) ‘除省宰封君外, 其餘封君, 請勿頒祿.’”

34) 李穡, 「李齊賢墓誌銘」, 金龍善 편, 앞의 책, 589-590면;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1045-1046면의 번역 참조.

예천부원군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권한공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70세가 넘었는데도 치사가 아니라 봉군인 상태에서 졸하였다는 점이고, 그것은 이제현과 같은 대신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

더욱이 1343년 12월에 충혜왕이 원에 끌려가고 나서 彦陽君 金倫이 채하중 등과 충혜왕을 구원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을 때 권한공이 충혜왕이 자초한 일이므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발언 순서는 권한공의 정치적 위상을 알려주고 있다. 원에 잡혀간 충혜왕을 구하기 위해 재상 및 국로들이 旻天寺에 모여 원에 상서하여 왕의 죄를 용서해줄 것을 청하고자 회의를 하였을 때, 의견을 낸 것은 권한공・강융・이능간 등이었다.[35] 이 가운데 김륜은 충숙왕 때 첨의평리를 지내고 1344년(충목왕 즉위)에 찬성사에 임명되었고,[36] 채하중은 1343년 11월에 정승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1344년 4월에도 우정승으로 임명된 바 있으므로, 김륜이 현직 정승인 채하중과 함께[37] 민천사 회의를 열었을 것이다.

현직 정승이 주도하여 열린 회의에서 권한공이 첫 번째 발언한 것은 강융이나[38] 이능간 등의 전직 정승 가운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융과 이능간은 봉군호가 없는 前職 정승일 뿐이었지만, 권한공은 예천군에 봉해져 있었으니 권한공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39] 이 회의에서 권한공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김륜의 뜻대로 원에 보내는 탄원서를 쓰는 것으로 정해졌고, 이에 관한 사실은 『高麗史』 등에서 권한공이 군신의 의리를 저버리는 불충한 인물로 만드는 구실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회의의 내용은 권한공이 정승을 지낸 뒤에도 봉군호를 갖고 국가의 원로로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요컨대, 권한공은 충선왕의 총신으로 충숙왕 즉위 이후 권력에서 소외되자,

35) 『高麗史節要』 권25 충혜왕 후4년 12월.
36) 박용운, 「高麗時代의 平章事」, 앞의 책, 2000c, 214면.
37) 박용운, 앞의 글, 1998, 96면.
38) 강융은 1335년 4월에 첨의좌정승・판삼사사에 임명되었으며 1339년 9월에 정승으로 재직 중이었다. 「鄭方吉傳 附姜融」, 『高麗史』 권124 嬖幸; 박용운, 앞의 글, 1998, 96면.
39) 이능간은 충혜왕 후2년 9월에 정승에 임명되었고, 동 후3년 6월에 정승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박용운, 앞의 글, 1998, 97면.

심왕의 옹립을 획책하다가 충숙왕이 권력을 다시 잡은 뒤 유배되었다. 그러나 원에서 유배되었던 충선왕이 사면되고 충숙왕과 화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권한공도 봉군으로 복귀하였고, 충숙왕 복위 후반기에는 정승으로 활약하였으며, 70세가 넘어서도 치사를 하지 않고 봉군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다. 사면된 이후 권한공에 관한 기록이 많지 남아 있지 않음에도, 『高麗史』 등에서 권한공이 충숙왕 복위한 뒤 정승에 오르고 여러 왕대를 거치면서 보통의 원로 재상보다 우대받았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권한공을 불충한 신하라고 하여 그를 폄출하려고 한 기록은 잘 보이지 않는다.

3. 고려말 권한공에 대한 세평

권한공이 『高麗史』 간신전에 들어간 인물인데도, 그는 '富貴之極'의 지위에 오르고 천수를 누리며 국로로서 대우를 받았는데, 권한공의 사후에 그러한 평가가 유지되었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고려말에 권한공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묘지명 기록이다.

> D1. [權氏는] 권한공의 아들 권중달의 딸이었다. 권씨가 시집갈 때가 되자 마땅한 혼처를 택하여 至正 辛巳年(1341, 충혜왕 후2)에 牧隱 李公에게 시집보냈으니, 공은 곧 稼亭 文孝公—李穀—의 외아들이었다. 당시 문효공은 文章으로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공은 어려서부터 精敏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이미 성취를 이루어서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당시 좋은 사윗감을 고르는 자는 다투어 公을 사위로 들이려 하였으므로 혼인하던 날 저녁까지 다투다가 마침내 花原君—권중달—의 사위가 되었다.[40]

D1은 이색의 처 권씨의 묘지명으로 이 부분의 내용은 권씨 자신과 더불어 그녀의 배우자인 이색의 훌륭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문장으로서 재상이 된 이곡의 외아들이자 과거에 급제한 이색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권씨가 선

40) 權近, 「貞愼宅主權氏墓誌銘幷序」, 『陽村集』 권39. "[權氏] 將笄, 擇所宜歸. 以至正辛巳, 適牧隱李公, 公卽稼亭文孝公之一子. 時文孝公以文章位宰相, 而公少精敏好學, 已有成名聲籍甚, 一時選佳壻者, 爭欲納公, 至婚夕猶爭之, 竟爲花原得." 원문의 籍甚은 평판이 좋다는 의미의 藉甚과 통하지만 실제는 誤字이다.

택되는 이야기를 넣은 것이다. 두 사람이 혼인할 때에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곡과 이색은 권중달의 딸이었다는 점보다, 권한공의 손녀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씨를 선택했던 것 같다. 그러한 사실은 이색이 1341년 성균관시에 합격한 후 권한공 손녀와의 혼인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권한공의 의발을 얻어 전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이색을 평하였다는 것에서 확인된다.[41] 이색이 권한공의 문한적 능력을 이을 손녀사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권한공이 급제하여 文翰職을 제수받고 재상이 된 후 지공거가 된 것, 성균관에서 서적을 고열한 것, 충선왕 이전 세 왕의 시호를 원에 요청할 때 홍약과 함께 奏文을 지었던 것,[42] 만권당에서 들어가 원의 문인과 교유하며 왕을 모시고 江浙行省을 유력하면서 시를 읊은 것[43] 등은 그가 당대 고려를 대표하는 문인의 하나였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하륜이 지은 「이색묘지명」에서 이색의 夫人 永嘉 權氏는 元朝의 明威將軍이며 本國의 화원군 권중달의 딸이자, 元朝의 太子左贊善이며, 本國의 都僉議右政丞 권한공의 손녀라고 하여 권한공을 굳이 밝힌 것도 이색이 권한공의 손녀사위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44] 이색과 권한공의 손녀가 혼인할 즈음에 권한공은 첨의정승을 지낸 뒤에 봉군된 상태로 국가 원로로 대우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만약 당시 고려 사회에서 권한공을 좋지 않은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다면, 여러 집안이 이색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색이 굳이 그녀를 배우자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권한공이 사후에도 고려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 E1. 함께 교유한 이는 醴泉君 權漢功, 完山君 裵珽, 平康君 蔡洪哲, 德城君 奇轍 등으로 모두 당세에 威望이 있었다.[45]

41) 張東翼, 앞의 글, 2011a, 81-83면.
42) 「權漢功傳」, 『高麗史』 권125.
43) 張東翼, 앞의 글, 2011a, 79-80면; 앞의 글, 2011b.
44) 河崙, 「牧隱李先生墓誌銘」, 『浩亭集』 권3.

E2-1. [백이정은] 일찍이 권부・우탁 등과 더불어 晦軒安先生[안유]의 문에서 遊學하였으며 성리학으로 自任하였다. (…) 충렬왕 갑신년(1284)에 권단이 과거를 주관하고 선비를 뽑을 때 권한공・김원상・崔誠之・蔡洪哲 등과 함께 登第하였다. (…) 무술년(1298)에 원이 사신을 보내 세자를 왕으로 삼으니 충선왕이었다. [그해] 8월에 원의 부름으로 충선왕이 원에 입조하게 되자 백이정도 숙위가 되어 따라가서 大都에 10년을 머물렀다. 뒤에 『程朱全書』를 많이 얻어 돌아와 同門 4・5인과 함께 날마다 講授하였으며, 經籍으로 淵海를 삼고 箋疏로서 梯航을 삼으니, 동방학자들이 비로소 성리지학을 알게 되었다.[46]

E2-2. [權呾이] 判衛尉寺事으로 옮겼고, 과거를 주관하여 뽑은 선비[掌試取士]가 권한공・김원상・최성지・채홍철・백이정 등으로 뒤에 모두 名相이 되었다.[47]

E1은 「權準墓誌銘」의 거의 끝부분으로, 이 글은 1352년(공민왕 1)에 그의 문인인 李仁復이 찬술한 것이다. 다른 묘지명과 같이 권준의 관력과 활동을 적은 뒤 마지막 부분에 그의 생애에 특색있는 일들을 적었는데, "함께 교유한 이는 醴泉君 權漢功 등으로 모두 당세에 위망이 있었다"고 하였다.[48] 이 글에 실린 권한공을 비롯한 네 명은 모두 봉군호를 받았고, 정승 또는 수첨의정승 등과 같은 최고위 관직을 지낸 바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묘지명이 지어지던 때에 사회적 위망을 인정받는 명사들이었는데, 권한공을 가장 앞에 적었다.

그러한 명성은 권한공과 함께 과거 급제한 소위 '동년'을 열거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E2-1은 백문보 문집인 『淡庵逸集』 「白頤正 行狀」의 일부이다. 백문보가 백이정의 문하에 들어간 것은 20세 때인 1322년이고 그 이듬해에 백이정이 죽었으며, 그의 사후 48년만인 1371년에 이 글을 지은 것이다.[49] 백이정 행장에서는 그가 1284년에 권단이 주관한 과거에서 권한공 등과 함

45) 李仁復, 「權準 墓誌銘」, 金龍善 편, 앞의 책, 634면. "(…) 所與□權醴泉漢功, 裴完山珽, 蔡平康洪哲, 奇德城轍, 皆當世偉望."

46) 白文寶, 「文憲公彝齋先生行狀」, 『淡庵逸集』 권2. "早與權文正溥, 禹文僖卓, 遊晦軒安先生門, 講磨訓誨, 自任以性理之學. (…) 忠烈王甲申, 權呾掌試取士, 與權漢功, 金元祥, 崔誠之, 蔡洪哲 登第. (…) 戊戌, 元遣使冊世子爲王, 卽忠宣王也. 八月, 徵王入朝, 王如元, 公爲宿衛從之. 留都下十年, 多取程朱全書以歸. 與同門四五人, 日相講授, 以經籍爲淵海, 箋疏爲梯航, 東方學者始知有性理之學."

47) 「權呾傳」, 『高麗史』 권107. "遷判衛尉寺事, 掌試取士, 多知名士, 權漢功, 金元祥, 崔誠之, 蔡洪哲, 白頤正, 後皆爲名相."

48) 김용선, 앞의 책, 1131면.

49) 백문보, 원주용 옮김, 『담암일집』, 한국고전번역원, 2012, 125면.

께 급제하였다고 하였다. E2-2는『高麗史』권단전의 내용으로 권단이 과거를 주관하여 뽑은 선비[掌試取士]가 권한공・백이정 등으로 당대에 모두 명상이었다고 한다. 이 기록은 바로 앞에 든 E2-1의 기록과 유사하다.

『高麗史』권단전의 편찬자가『담암일집』의「백이정 행장」을 원자료로써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는 것은 두 기록에서 제시된 권한공 이하의 급제자가 백이정을 제외하고 같은 순으로 인물이 열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高麗史』권단전의 찬자는「백이정 행장」에서 당사자인 백이정이 주어로서 생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백이정을 추가해 넣었던 것이다.

백이정과 같이 급제한 동문으로 권한공을 가장 앞세웠다는 것은 권한공이 성적이 우수했거나 동문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급제한 1284년 과거의 장원인 趙宣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자로 해석되지 않는다.[50] 그렇다면 1284년 과거 급제자 가운데 권한공 등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으므로 직접 이름을 적어놨다고 이해해야 한다. 권한공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앞서 거명되고 있으니, 동년 중에서 으뜸이었던 것이다. 이때 지공거였던 김주정의 외손녀와 권한공의 아들 권중달이 혼인을 하여[51] 김주정과 권한공이 인척이 된 것도 권한공이 김주정의 문생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백이정 행장」을 기록한 백문보는 권한공을 간신으로 인식하고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백이정을 돋보이게 해주는 가장 뛰어난 동문으로 권한공을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권단전에서 '多知名士', '後改爲名相' 등의 표현은 권단이 인물 보는 눈이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거론된 이들이 모두 재상을 지냈다. 더욱이『高麗史』권단전의 찬자는 권한공이 간신전에 입전되었음에도 권단을 칭송하기 위해「백이정 행장」을 참고하여 권한공을 '名士', '名相'의 한 사람으로 묘사해놓았다. 이처럼『高麗史』열전의 찬자들도 맡은 인물에 따라

50) 백이정이 급제할 때 장원은 趙宣烈이었다.『高麗史』권73 選擧志1 科目1 忠烈王 10년 10월.
51) 金惠苑,「忠肅王 8年(1321)의 瀋王擁立運動과 그 성격」,『梨大史苑』제31집, 이화사학회, 1998, 43-44면.

권한공을 명상의 한 사람으로 적어놓기도 하고, 권한공의 불충하고 나쁜 행적만을 간신전에 수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 문종대 간행된 『高麗史』 권단전이 권한공을 뛰어난 인물로 기록한 것은 찬자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던 자료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밖에도 권한공에 대한 세상의 호의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조금 더 있다. 이색은 권판서—권중달—가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는 시에서 그 아들은 文坦—권한공—이 남긴 風度를 다시 떨칠 것이며, 明威에게 남은 경사[餘慶]가 함께 생겨날 것이라고 하였다.[52] 권한공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이 시에서 이색이 쓴 권한공이 남긴 풍도가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이 권한공의 손자에게 전해지기를 빈다는 것은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이어 이색은 권한공의 손자 권집경이 등제한 것을 하례하는 글에서 화원군—권중달—의 두 아들이 음서로 출사하여 과거에 급제한 할아버지—권한공—를 계승한 자가 없었는데, 권집경이 급제함으로써 예천군 집안에 뛰어난 문장가가 나왔다고 하였다.[53] 이 시를 통해서 이색은 과거에 급제하고 뛰어난 문장가였던 권한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한공의 내외손이 만든 四寸會는 그가 한 혈족의 구심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촌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이색의 시에 의하면 권한공의 내외손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이름을 사촌회라고 하고, 해마다 두 사람씩 번갈아 가며 술과 음식을 마련하곤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색이 근심과 병으로 지낸 십여 년 동안 이 모임도 거의 열리지를 않았는데, 李龜城이[54]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울 목적으로 삼월 초하룻날에 빈객을 많이 초청하고 크게 풍악을 연주하면서 예전보다 열 배나 더 성대하게 잔치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55]

---

52) 李穡, 「聞權判書生子」, 『牧隱集』 권27. 이 글에서 明威는 밝은 위엄이라는 뜻도 되지만, 권한공과 대비하여 아들을 낳은 명위장군 권중달을 중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53) 李穡, 「賀權執經登第」, 『牧隱集』 권24.

54) 龜城은 경주의 별호이니, 권한공 1녀의 첫 번째 남편의 아들인 月城君 李成林일 것이다.

55) 李穡, 「醴泉君內外孫 聚飮曰四寸會 歲二人辦酒食 僕憂病□□餘十年 此會亦罕設 李龜城欲振頹綱 三月初吉 盛賓客 大作樂 視昔十倍 明日追錄一首 呈龜城座下 幸捧腹」, 『牧隱集』 권28. 사촌회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李鍾書, 「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 親族關係」, 서울대

권한공의 내외손이 모이는 '사촌회'는 권부의 '一家九封君'과 더불어 '族勢'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였다. 즉, 권부가 그의 아들・사위 8명 더불어 9명이 봉군이 되었다는 것은 권부가 많은 자녀를 낳았을 뿐 아니라 아들과 딸이 혼인할 정도로 잘 성장했으며, 아들과 사위들이 고위 관직에 오르고 봉군될 만큼 출세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출산 자체가 쉽지 않고 영유아의 사망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낮은 고려후기 사회에서 8명의 아들과 사위가 이러한 영예를 누리는 일은 매우 드물었던 현실이 반영된 표현이다.

권한공의 내외손이 모이는 사촌회도 그에 못지않았다. 권한공은 5남 6녀를 낳았으며, 권중달・권중화 등 두 명의 아들과 7명의 사위—1녀가 두 번 혼인함—가 모두 1명 이상의 자식을 키워 40여 명이 넘는 내외손녀를 두었다. 사촌회에 참여 자격이 있는 자들이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이면 80여 명에 이를 만큼 대성황을 이루었을 것이다.

권부계와 권한공계를 증손대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 권부(1262-1346)는 5남 4녀를 두었으며, 그 자녀대에는 권준이 2남 2녀, 사위 한유충이 2남 2녀, 종정(승려), 사위 이제현이 2남 3녀, 權皐가 3남, 王煦가 1남 1녀, 權謙이 2남 2녀, 사위 王璹이 1녀, 사위 王珣이 2남 3녀를 각각 키웠고, 그 아래 권부의 내외증손들이 101명이었다.[56] 한편, 권한공(?-1349)도 5남 6녀를 두었는데,[57] 權仲達이 2남 5녀, 權仲和가 1남 1녀, 1녀의 사위 李壽得이 1남, 1녀의 두 번째 사위 廉悌臣이 4남 5녀, 사위 朴瓊이 1남 4녀, 사위 柳總이 2남 4녀, 사위 宋英武가 1남 1녀, 사위 韓繼忠이 3남 2녀, 사위 康舜龍이 1남 1녀, 權仲炎과 權仲山이 無子, 權可封이 1남 있었고, 그다음 세대에 119명의 내외증손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권부와 권한공은 활동 시기에 약간의 선후 차가 있지만, 출세한 내외자손들을 많이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다.[58]

박사학위논문, 2003, 210-215면.

56) 『성화보』 地; 黃.

57) 권한공의 후손들이 편찬한 『一齋先生實紀』의 「遺事略」 말미에 권한공의 자손들을 기록하였는데, 첫째 딸이 재가하여 두 명의 사위—이수득・염제신—가 있었던 것을 오해하여 이수득과 염제신을 별개로 보아 5남 7녀를 두었다고 하였다. 『성화보』와 차이가 있는 자손들을 보면 염제신은 3남 5녀, 유총은 2남 5녀를 낳았다고 하였다.

58) 『성화보』 宇; 宙; 章-慕. 다만, 현손 이후 세대에서 권부의 자손이 더 많고, 족세도 훨씬 번성하였다.

〈표 1〉 '四寸會圖'의 명단과 관직[59]

자녀	관직	성명	관계	성명	관직	비고
一子(1)	密直使・花原君	權仲達	자	權嗣宗	判府事	판사
				權季容	判書・醴泉君	呂川君
			女夫	全貢	재신	
				柳惠芳	郡事	
				閔瑾	驪山君	堅城君
				이색	韓山伯	韓山府院君
				金允輸	典書	
二子(2)	領議政・醴泉伯	權仲和	子	權邦緯	都摠制	
			女夫	韓寧	판서	녹사
三子(9)		仲炎				
四子(10)		仲山				
五子(11)		可封	자		無名	
一女前夫	시중	李得壽	자	李成林	侍中・月城君	李壽得/ 檢侍中
一女後夫(3)	曲城君	廉悌臣	자	廉國寶	개성부사・곡성군	판개성부사・곡성군
				廉興邦	첨의평리・대제학	삼사좌사
				廉廷秀	大司憲	
				廉廣原		※ 성화보
			女夫	洪徵	밀직사・唐城君	밀직부사・당성군
				任獻	대사헌	
				鄭熙啓	左參贊・雞林君	
			女	信和宮主		(공민왕)
			女夫	李悳	판서	
			後夫	卞南龍	한성부윤	※ 성화보
二女(4)夫	판서	朴瓊	자	朴居實	판서	판사
			女夫	崔乙義	判密直事・完城郡	밀직부사
				趙珣	都僉議司使	宣授萬戶
				尹紹宗	判書	
				盧向(冏)	판삼사사	( )는 성화보
三女(5)夫	대언	柳總	자	柳曼殊	찬성	
				柳景輝	中郎(將?)	성화보 無
			여부	金居斗	전서	嘉善・府使
				許璡	판사	敎授官
				鄭天貴	판사	鄭만 있음
				鄭賢輔	판서	성화보 무
				李思義	珍城君	令城君
四女(6)夫	嘉州郡事	宋英武	자	宋天吉		
			여부	李龜壽	별장	

59) 〈표 1〉은 『일재선생실기』의 부록에 있는 「사촌회도」를 바탕으로 『성화보』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자녀의 명칭은 전자의 경우 先男後女의 원칙에 따랐으나 후자는 출생순에 따라 기록하였는데, 사촌회가 있던 시기가 고려말이었으므로 본문에서도 권한공 자녀는 출생순으로 적고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였다. 또한 비고는 두 책을 비교하여 관직이 다르거나 『성화보』에 있고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

五女(7)夫	判書	韓繼忠	자	韓安海	전서	
				韓安景	知隨州事	
				韓安邦		
			여부	金尙漢	전서	
				李陰	전서	
六女(8)夫	平章事・載寧伯	康舜龍	자	康熙	판서	
			여서	柳滋	節度使	知豊州事

권부의 '一家九封君'이 이루어졌을 때가 공민왕 대였다면, 권한공 집안의 사촌회는 우왕 때쯤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권부계와 권한공계의 번성이 난형난제라고 할 만하다. 내외손자녀를 기준으로 자손이 출세한 것은 권한공계가 권부계에 미치지 못하여도 자손이 번창한 정도는 권한공계가 권부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으니, 권한공의 가계는 당대 모든 집안으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공통조상이자 중심인물인 권한공의 행적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명망이 없었다면 사촌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권부의 손자인 권근은 권한공의 딸 권씨의 묘지명에서 "權溥와 권한공이 동등한 덕망으로 함께 冢相의 지위에 있으므로 兩家의 자손이 가장 크게 번창하였다."라고 하였고,[60] 권근의 외손이자 권부의 외현손인 서거정은 『성화보』 서문에서 권부와 권한공의 후손들이 크게 번창한 것을 두고, "오늘날 권씨 성을 가진 벼슬아치로 조정에 포진해 있는 이들이 무려 수천에 달하는데, 모두 이 두 대족의 支派이다"라고 했던 것이다.[61] 권근과 서거정은 당대의 관념으로 권부의 후손이고 권한공과는 혈연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권한공계를 권부계와 거의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권한공를 중심으로 한 사촌회의 전통은 권한공의 아들 권중달의 내외손에게도 이어졌다. 자녀수와 출세한 인물 등을 보건대 권중달의 내외손은 권한공의 그것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어도 사촌회를 집안의 전통으로 인식하고 계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권중달의 內外孫들이 慶弔나 迎餞의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모이는 것을 '四寸會'라 이름하고, 해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관장하게 하여 그들을 有司라 하며, 유사는 歲末에 모임을 소집하여

60) 權近, 「貞愼宅主權氏墓誌銘幷序」, 『陽村集』 권39.
61) 「序」, 『성화보』.

그 일을 내년의 다음 유사에게 넘겨주곤 하는데, 이는 家法이었으며, 모임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사촌회의 아비 항렬[父行]이 되는 한두 사람을 맞이하여 그 좌석을 주관하게 하였다고 한다.62)

처음에 권한공의 내외손으로 구성된 사촌회는 주로 연회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으나 권중달을 중심으로 한 사촌회는 경조사 및 영송 등으로 모이는 이유를 구체화하였고, 일을 관장하는 자에게 유사라는 직함을 부여하였으며, 모일 때는 아비—권중달의 자녀—항렬이 참가하도록 하는 등의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사촌회는 내외손들이 제사 때마다 모이고, 순서대로 돌아가며 제사를 주관하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인데, 권한공과 권중달의 후손들이 '사촌회'라는 이름을 만들고 자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사촌들의 공통조상인 권한공과 권중달의 후손이라는 긍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권한공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면 사촌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한 세대가 지나 권중달 내외손의 사촌회가63) 계속 활동하고 모임이 더욱 체계화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권한공은 최고위 관직에 오르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집안이 사돈이 되고자 할 정도의 명망이 있었다. 권한공의 내외손들이 사촌회를 만들어 유대관계를 가진 것도 사촌들이 조부 또는 외조부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그 친족이라는 점에 자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조선초 권한공의 세평과 그 변화

권한공이 살아서는 물론 죽은 이후에도 명망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각종

62) 『牧隱集』 권27. 『일재선생실기』는 『목은집』에서 사촌회에 관한 기록을 옮겼으나 권중달 내외손의 모임과 권한공 내외손의 사촌회를 섞어 놓았다.

63) 권한공을 기준으로 하면 그의 내외증손이 모이는 모임은 6촌회가 된다. 그러나 사촌회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상호부조의 권리 의무를 공유하는 범위는 사촌 이내에 그치고 그 이상으로는 확대하지 않았는데, 교류의 과정에서 5촌숙과 5촌질의 교류가 발생하고, 부모를 모신다거나 유고를 대신하여 참석한다면 6촌 형제자매까지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며, 5·6촌의 선택은 개인적이라고 한다. 이종서, 앞의 글, 214-215면.

사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근거가 되는 것 가운데는 권한공의 손녀사위인 이색이 지은 것도 있어 세평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권한공이 최고위 관직을 지낸 것, 과거에 급제하고 문장을 잘 짓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가 다시 적지 않은 자녀를 낳은 데다가 출세한 자들은 많았던 것 등은 누구나 이룰 수 없는 일이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이제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권한공에 대한 세평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다음은 조선 태조대의 기록이다.

> F1. 나—권근—의 시조 太師公이 高麗 太祖를 도운 공로로 賜姓을 받고 移封된 이후 대대로 그 미덕을 이루었다. 나의 문정공—권부—과 문탄공—권한공—에 이르러 동등한 덕망으로 함께 冢相의 지위에 있었으며, 양가의 자손이 가장 번성하고 컸다. 나는 부인의 族屬으로 촌수는 비록 머나 宗人이며, 또 공—이색—의 문인이니 어찌 청해온 명을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64)
>
> F2. [태조 7년 2월] 임금이 호를 松軒居士라 하였다. 임금이 左承旨 李文和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前朝[고려]의 忠肅王이 居士라 칭하고, 醴川君 權漢功에게 致書하였다고 한다. 내가 奉化伯에게 居士를 칭하여 致書하고자 하는데 號를 어찌 해야겠는가'라고 하였다. 李文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금의 潛龍 때 軒號가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可하다고 하였다. 드디어 松軒을 호로 삼았다.65)

F1은 이색의 처 권씨의 묘지명으로, 권부와 권한공이 동등한 덕망으로 함께 冢相의 지위에 있었고 兩家의 자손이 가장 크게 번창하였다고 하였다. F2는 조선『태조실록』의 기록으로 太祖가 奉化伯 鄭道傳에게 致書를 하기 위해 고려의 충숙왕이 권한공에게 했던 사례를 들고, 자신의 헌호를 정하고 있다.

F2에서 태조 이성계가 충숙왕과 권한공이 주고받은 사례를 들면서 자신의 호칭을 어떻게 할지 물었던 것은 충숙왕과 권한공의 관계가 좋았다고 알고

---

64) 權近,「貞愼宅主權氏墓誌銘幷序」,『陽村集』권39. "予惟吾宗, 大師公佐高麗太祖, 受姓移封以來, 世濟其美. 及吾文正公與文坦公, 並德齊時, 俱位冢相, 兩家子孫最蕃以大. 予於夫人, 族屬雖遠宗人也, 又於公門人也. 銘其敢辭."

65)『太祖實錄』권13 태조 7년 2월 신사. "上號松軒居士. 上謂左承旨李文和曰, 予聞前朝忠肅王稱居士, 致書醴川君權漢功. 予亦欲於奉化伯, 稱居士致書, 何以爲號. 文和對曰, 上之潛龍時軒號何如, 上曰可. 遂以松軒爲號."

있었기 때문이다. 권한공이 정도전에 비견되고, 군신을 초월하여 시문으로 교유하는 사이였다는 것은 권한공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매우 호의적이었음을 암시한다.

조금 더 깊이 해석해야 할 것은 F1의 사료이다. 이 글의 찬자인 권근은 이색의 부인 권씨의 묘지명을 써주게 된 동기를 서술하면서,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인 권부를 끌어들여 권부와 권한공이 동등한 덕망으로 총재를 지냈고, 안동권씨 가운데 권부와 권한공의 후손이 가장 번창하고 있으며, 자신이 권씨 부인과 촌수가 먼 宗人이라고 하였다. 권근이 권씨와 族屬으로 촌수가 먼 종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12촌 간이므로 가깝지 않다는 뜻이다. 고려 사회는 종법에 근거한 부계 친족 사회가 아니어서 중간에 혼인관계가 없는 12촌은 매우 먼 것이며, 종법에 따른다 해도 권씨는 출가하여 한산 이씨 가문에 속하였으므로 타인이나 다름없다. 결국 권근이 묘지명을 써주게 된 것은 종인 권씨 부인 때문이 아니라 좌주인 이색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권근이 묘지의 주인인 권씨에 집중해서 서술해야 함에도 '우리 문정공 권부'를 권한공과 비견한 것은 양쪽 집안의 족세가 거의 비슷했음을 알려준다. 권부와 권한공의 후손들이 어느 쪽이 안동권씨 가운데 최고인지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였으므로 권근이 찬자로서 큰 결례인데도 묘지명에서 굳이 양가의 자손이[66] 가장 번창하다고 한 것이다. 권근은 묘지 주인공의 조부이며 좌주 이색의 처조부인 권한공을 우호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안동권씨 내에서 으뜸을 다투는 두 가계의 중심인물로서 권부와 권한공을 들고, 은연중에 자신의 조상인 권부를 높이고자 하였다.

권근은 고려후기의 동방의 현인을 기록한 「東賢史略」을 지었다. 이 책은 중찬 허공에서 시중 홍언박에 이르는 24명의 인물의 약전을 서술하였는데, 권단과 권부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권한공과 함께 심왕 옹립을 주도한 채홍철이 들어갔는데도 권한공은 이제현과 함께 제외되었다. 권한공과 유사한 경력과 문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최성지·채홍철 등이 수록되었음에도

66) 양가의 자손은 양가를 대표하는 권부의 손자 권근과 권한공의 손녀 권씨를 비교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한공은 배제된 것이다. 안동권씨의 대표적인 인물인 권부와 권한공은 高祖—權仲時—가 같은 8촌 형제이지만, 친근한 유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약간의 경쟁의식마저 엿보인다.[67] 어쨌든 권근이 권부와 권한공을 비교하는 것은 당대에 권한공이 대단한 명사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태조대에 이어 定宗과 太宗代에는 권한공의 세평을 알려주는 자료가 보이지 않고, 세종대에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에서 권한공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1424년(세종 6)에 춘추관의 명을 받아 경상도에서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는 토성 인물의 수록 원칙이 있는데, 안동의 수록 원칙과 서술방식은 안동 출신으로 벼슬한 자, 덕과 재능이 있는 자, 功業이 출중한 자로 '某代에 某人'이라고 써서 나타낸다고 하였다.[68] 안동 토성조에 수록된 인물은 金宣平・權幸・張佶 등 안동 三太師와 더불어 金方慶・權溥・金士衡・權適・權漢功・權蘭・權思復・金九容・權近 등으로 안동김씨와 안동권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69] 흥미로운 것은 수록 원칙에서 밝혔듯이 재상을 지낸 고위 관원과 더불어 권천・권사복 등 국가에 공을 세우거나 문장에 능하여 문집을 남긴 자들을 포함하였다는 것이다.[70] 권한공이 젊은 시절에 안동의 廬山 백련사에서 10년 동안 글을 읽었다는 것은[71] 안동이 본관이라는 점 이외에 또 다른 연고가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정승을 지내고 문한으로 명성이 있던 권한공이 안동의 대표 인물로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 세종초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1432년(세종 14) 완성된 『八道地

67) 張東翼, 앞의 글, 2011a, 94면.

68) 『慶尙道地理志』 安東大都護府 土姓. "從仕德藝功業出衆者, 某代某人, 是如開寫." 徐仁源,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朝鮮初期 地理志 硏究—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혜안, 2002, 48면.

69) 『慶尙道地理志』 安東大都護府 土姓.

70) 權蘭은 김방경의 매서이며, 몽골의 침입 시에 延州守令으로 활약했다. 「金方慶傳」, 『高麗史』 권104. 권사복은 공민왕 17년 판전교시사로 재직 시 환관 이강달의 추천으로 성균시의 시관으로 거론될 만큼 文才가 있었던 것 같다. 『高麗史』 권74 選擧志2 科目2 國子監試 공민왕 17년; 『高麗史節要』 권28 공민왕 17년 2월. 실제로 그가 우왕대에 지은 「奉呈廉相國」, 「次江陵東軒韻」, 「送客促馬到湖樓客已去登舟有作」, 「放雁」, 「長守驛壁上有題」, 「謝友人惠茶」, 「丙寅三月病後題」 등의 시가 『東文選』에 전하고 있다. 『東文選』 권16; 권21.

71) 김창현, 「고려말 신돈정권과 영남」, 『지역과 역사』 제18호, 부경역사연구소, 2006; 『고려후기 정치사』, 景仁文化社, 2017, 399면.

理志』를 바탕으로[72] 1454년(단종 2)에 만들어진 『世宗實錄地理志』의 안동대도호부 인물조에는 "都僉議右政丞 文坦公 權漢功 〈忠肅王時人〉"이라고 하였고, 그와 더불어 고을의 인물로는 김방경・왕후・김사형・권근 등이 포함되어 있다.[73] 새로이 포함된 인물은 권부의 아들로 충선왕의 양자가 된 왕후이고, 안동 3태사를 비롯해 권부 등이 빠지게 되었으나 권한공은 여전히 들어있었다.

권부가 빠지게 된 것은 권부의 증손인 權踶가 1438년부터 시작되어 1442년 완성된 『高麗史全文』의 편찬에 참여하였다가 사후에 고신을 삭탈 당한 사건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세종은 1449년(세종 31) 권제가 『高麗史』를 개찬하면서 깎고 보탠 것이 많다고 하면서 권제의 아버지 권근이 명황제의 聖旨를 사사로이 開坼한 일을 왜곡하였고, 史草에 權溥・權準・權皐 등의 행실을 낮추어 쓴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74] 권제 등이 완성한 『고려사전문』은 『龍飛御天歌』에 실린 태조 관계 기사가 누락된 것과 권씨 가문의 비위를 감춘 사실 등이 적발되어 반포가 중단된 일이 권부가 지리지의 인물조에서 빠지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75]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 『고려사전문』을 만들 당시만 해도 권부에 관한 좋지 않은 행실들을 전하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안동 인물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록 원칙이 엄격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물의 수록이 각 道에서 보고한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책에 권한공이 들어간 것은 안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권한공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續撰八道地理志』에 경상도 안동 토성 명현으로 權軫・권제 등 안동권씨만 6명이 포함되었다.[76] 이 책은 김방경・권부・권한공 등 안동을 대표하는 인물을 모두 제외하고 인물 수록에서 특정 가계를 편중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

72) 『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정월 기묘.
73)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74) 『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2월 계유.
75) 韓永愚, 「15세기 관찬 사서 편찬의 추이」, 앞의 책, 40-41면.
76) 『續撰八道地理志』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土姓.

안동 지역 인물 수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東國輿地勝覽』이었다. 이 책에서 밝힌 수록 원칙은 "인물은 과거의 어진 이를 적고 名宦은 장래에 잘하기를 권하는 것이다."[77]라고 하였는데 '과거의 어진 이'라는 것은 『경상도지리지』에 비해 아주 단순하고 주관적인 기준이다. 이 방침이 반영된 안동대도호부 인물조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김방경계—金孝仁 포함—와, 권부계—권단 포함—가 각각 14명과 1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삼태사의 순서가 김선평・권행・장길의 순서에서 권행・김선평・장길로 바뀌었고, 권부가 다시 들어간 것은 물론 그의 아버지 권단, 권부의 후손 권준・권염 등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권한공은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세종실록지리지』보다 『동국여지승람』에 훨씬 많은 인물이 수록되었음에도 권한공이 제외되었던 것이다. 『高麗史』 간신전에 권한공이 들어가서 빠졌다면 개국원종공신이며 재신을 지낸 그의 아들 권중화는 대신 들어갈 만했다.

〈표 2〉 조선초 지리지 안동 인물조 수록 인물의 변화[78]

구분 (인물과 후손)	경상도지리지 (1424년)	세종실록지리지 (1452년대)	속찬지리지 (1477)	동국여지승람 (1481)
안동 삼공신	金宣平 權幸 張佶			權幸 金宣平 張佶 ※ 권행이 김선평보다 앞서 기록
金方慶(系)	金方慶 金士衡 金九容	김방경 김사형		金孝印 김방경 金忻 金恂 金永暾 金永煦 金怡 김구용 金齊顔 金九德 (고려)/ 김사형 金墩 金礩 金磌
權溥(系)	權溥 權近	王煦 권근	權軫 權踶 權採 權擎 權恭 權愷	權旺 권부 왕후 權準 權廉 權適 權和(고려)/ 권근 權遇 權湛 권제 권채 권람 權攀 權侹(조선)
權漢功	권한공	권한공		
기타(金方慶・權溥系가 아닌 안동 인물)	權適(고려 예종) 權闡 權思復			金富民 金敞 金益精 金壽齡 金紐 權克和 權珹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인물 편목을 비교하면 고려시대 인물이 59명에서 601명으로 10배 넘게 추가되었고, 조선시대 인물은 38배 가

77) 「東國輿地勝覽序」, 『新增東國輿地勝覽』 卷首. "人物記已往之賢, 名宦勸將來之善."

78) 조선초 지리지의 편찬과 연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李成茂, 「解題」, 『全國地理志(壹)』,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83, 6-7면.

까이 추가되었다. 고려시대 인물이 늘어난 이유는 명문의식으로 명문거족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고려시대와 관련짓기 위해 선조를 대거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79]

『동국여지승람』 인물조에서 본조—조선—에 해당하는 안동권씨 인물은 10명인데, 권극화・권함 등을 제외하고 8명이 권부의 후손이며 그 가운데 7명은 權僖의 후손이다. 나머지 두 사람은 權興系이다. 권부를 정점으로 한 고려말 권문세족으로서 가계와 신왕조에 들어와 새로 구축된 권희를 정점으로 한 가계의 구분이다. 권희계에는 세족의 후예이면서도 고려말 사대부 간에 중망이 높던 권근이 있었다.[80]

그리고 1530년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안동대도호부 인물조에서는 고려의 權幸・金宣評・張吉・金富民・金敞・權守平・金孝印・金方慶・金忻・權呾・金永旽・金永煦・金士安・金怡・權溥・王煦・權準・金九容・金齊顔・金九德・權和 등과 함께 조선의 金士衡・權近・權遇・權湛・權踶・權採 등이 수록되었다.[8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물이 『세종실록지리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새로 들어갔음에도 권한공은 물론 그의 후손으로 조선 개국원종공신인 권중화 등도 기록되지 못한 반면, 권부와 그의 후손들은 왕후・권준, 권근・권우・권제・권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물 수록은 『동국여지승람』의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것 같다.

『경상도지리지』에서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기까지 안동대도호부에 수록된 인물을 비교해 보건대, 안동권씨 특히 권부계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권한공과 그 후손들이 배제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가 『팔도지리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1432년 이전에는 안동 권씨를 대표하는 인물이 권한공이었으나,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권부와 그의 후손들이 안동 권씨를 대표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다.[82] 다시

79) 徐仁源, 「『東國輿地勝覽』의 편찬」, 앞의 책, 187-191면.
80) 李泰鎭, 「15世紀 後半期 「鉅族」과 名族意識—《東國輿地勝覽》 인물조의 분석을 통하여—」, 『韓國史論』 제3호, 서울대 국사학과, 1976, 280-283면.
8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4 人物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다만 함께 기록된 안동대도호부의 속현인 일직현과 풍산현의 인물은 제외하였다.

말해 1432년 이후 어느 시기에 권한공에 대한 세평은 나빠진 반면에 권부와 그 후손들에 대한 평가는 좋아져서 권한공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안동 권씨 가운데 족세가 가장 번성한 권부계와 권한공계는 姓貫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초 공신을 다수 배출한 권부계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지고 권한공계가 크게 위축되자, 권부계는 안동김씨를 제2토성으로 밀어내고 명실상부한 제1토성의 위치가 되었으며 다수의 인물을 권부계가 차지하였던 것 같다. 그러한 상징이 『동국여지승람』에서 권행이 김선평에 앞서 기록된 것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동국여지승람』 총재관의 하나로서 편찬 과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던 서거정이 권근의 외손이었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83]

그 사이 권한공은 『高麗史』 간신전에 들어가고 안동을 대표하는 명사에서 갑자기 간신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 배경에는 세종대 성리학적 역사관이 확립되고 그에 근거한 역사 편찬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되어 있다. 세종대 중반인 1436년과 1438년에 『通鑑訓義』와 『資治通鑑綱目訓義』가 각각 완성되고, 이어 『治平要覽』이 편찬되었다. 이들 사서는 『자치통감』과 같이 정치에 감계와 교훈을 주고, 유교정치 사상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조선시대 역사 편찬의 전범이 되었다.[84] 특히 『치평요람』과 『高麗史』의 편찬에 참여했던 李石亨(1415-1477)이 지은 『대학연의집략』의 '辨人才'에서는 '帝王知人之事', '奸雄竊國之術', '憸邪罔上之情'(姦臣, 讒臣, 佞倖之臣, 聚斂之臣) 등은 빠짐없이 실었으며, 그 가운데 '憸邪罔上之情'에 속한 유형의 인물로서 권한공이 포함되었다.[85] 이석형이 『高麗史』의 어느 부분을 찬수했는지 분

82) 조선초만 해도 아직 전 왕조의 인물에 대한 포폄이 엄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한공의 문학적 능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권중화 등 그의 후손들이 활약하였기 때문에 권한공이 『세종실록지리지』 안동대도호부 인물조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高麗史』에서 권한공은 간신전에 입전되고, 『치평요람』・『동국통감』 등의 사서에서 권한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던 반면 권부의 후손은 권제를 비롯하여 세조대 이후 정국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됨에 따라 권부와 그 후손들이 대표 인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83) 徐仁源, 「『東國輿地勝覽』 編纂者와 修撰者」, 앞의 책, 216-218면.

84) 金慶洙, 「治平要覽에 대한 연구」, 『湖西史學』 제21・22합집, 호서사학회, 1994, 43-46면; 오항녕, 「性理學의 발달과 歷史學」, 『朝鮮初期 性理學과 歷史學—기억의 복원, 좌표의 성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99-100면.

85) 정재훈, 「15세기 儒敎政治思想과 帝王學」, 『조선전기 유교사상 연구』, 태학사, 2005, 145-147면.

명하지 않지만, 그의 평가가 『高麗史』 간신전에 권한공을 포함시키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高麗史』 편찬자들은 유교적 정통론의 입장에서 당·송·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기술하였으므로 열전에서 '事元派'를 간신·반역전에 편입시켰다.[86] 그러므로 충선왕의 측근으로 오랫동안 원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였고, 원 황제에게 충숙왕을 폐하고 심왕을 고려 국왕으로 옹립해줄 것을 요청한 권한공 등의 행위는 조선초 유학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87]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권한공은 『高麗史』 간신전에 들어간 뒤에 만들어진 지리서의 안동 인물조에 권한공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된 이후 공식적으로 전왕조의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한 '正史'인 『高麗史』에서 간신으로 규정한 자를 본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군현에서는 간신전에 입전된 인물이 지리지 군현 인물조에 실리는 사례도 있었다. 원간섭기에서 고려말까지 활동하였으며 권한공과 같이 『高麗史』 간신전에 들어간 인물로는 宋玠·王惟紹·宋邦英·吳潛·金元祥·柳淸臣·蔡河中·辛裔·李春富·金元命·金鉉·池奫·李仁任·林堅味·廉興邦·曺敏修·邊安烈·王安德 등 18명이 있다. 이 가운데 『세종실록지리지』 인물조에 들어간 자는 한 명도 없으나 『동국여지승람』에는 송분과[88] 신예가[89] 포함되어 있으며 좋은 일만 적어놓았다. 군현의 대표 인물로서 『高麗史』 간신전에 있는 자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전라도 여산현과 경상도 영산현에서

86) 邊太燮, 「「高麗史」의 內容分析」, 앞의 책, 138-139면.

87) 한 인물이 부원 세력이었다고 해도 나쁘게만 평가된 것은 아니었다. 권부의 아들 권겸이 공민왕 5년 반원 개혁 때 제거되었는데도 그를 포함하여 권부의 '一家九封君'을 자랑하였던 것은 권겸의 부원행위를 죄악시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그의 자손들이 처형되지 않았으며 가문의 현달한 인물로 서거정이 지은 『성화보』 서문에서는 권부·왕후와 함께 권한공과 권겸이 언급되었다. 신은제, 「『高麗史』 편찬 후 고려에 대한 기억」, 『한국중세사연구』 제23호, 한국중세사학회, 2007, 72-73면; 朴胤珍, 「『高麗史』 叛逆傳 立傳 기준과 고려말 조선초 '附元' 인식」, 『韓國史學報』 제52호, 고려사학회, 2013, 92-98면.

8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 全羅道 礪山縣 人物.

8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7 慶尙道 靈山縣 人物.

는 송분과 신예를 포함시켰으니 사실상 명예를 회복시켜 준 셈이다. 그리고 전라도 흥양현 인물조에는 유탁을 넣고 그가 유청신의 손자라고 기록하여 유청신의 행적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90] 게다가 권한공과 같이 심왕 옹립을 주도했던 채홍철은 아예 간신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동국여지승람』 평강 인물조에 당당하게 올라있다.[91]

고려에서는 물론 조선 건국 이후 세종대 중반까지도 세평이 좋았던 권한공이 간신전에 포함되고, 안동 인물조에서 삭제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으나, 현재에 남아있는 사료만으로는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안동 인물조에 수록된 인원의 변화가 크고, 안동권씨 중에서도 권부계 후손들이 매우 많아졌다는 점에서 안동권씨 권부계가 안동 지역의 제1 가문으로 올라서는 과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와 더불어 조선 세종대 이후 권제・권람 등 권부의 손자인 권근의 직계 자손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반면에 권한공의 후손들은 개국원종공신 권중화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중앙 정계에서 활약하는 인물이 없었다.[92] 이러한 상황이 『高麗史』 편찬 시에 권부와 권한공을 기록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93]

그럼에도 국가에서 편찬한 『高麗史』와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소외되었던 권한공이 권근의 외손인 서거정이 쓴 『안동권씨성화보』 서문에서 여전히 권부와 비견되고, 두 계보가 족세를 다투는 것으로 서술된 것은 권행의 후손

9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0 全羅道 興陽縣 人物.
9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7 江原道 平康縣 人物.
92) 권한공의 자손들이 번창하였으나 아들만을 보면 권중달은 재상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반면 권중화는 조선 건국에 비협조적이었으나 조선이 개창된 후 기년・숙덕으로 판문하부사에 이르고 치사하였으며, 개국원종공신에 봉해졌다. 金炯秀, 「權仲和開國原從功臣錄券에 대한 일검토」,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270-271면. 특히 권중화는 고위 관직에 오르고 원종공신에 봉해지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高麗史』에서 권중화의 어머니인 권한공 二室 康氏의 간통과 처형이 부각되면서 권중화 후손들 전체가 출세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진한, 앞의 글, 2019, 139면.
93) 『高麗史』 열전 찬자들의 인물에 대한 구별 기준은 유교적 선악이었다. 김광철, 「여말선초 세족층의 동향」, 『釜山史學』 제35호, 부산사학회, 1998. 그런 점에서 『高麗史』 편찬 과정에서 자신의 조상이 간신전이나 반역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당대의 양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신은제, 앞의 글, 69면. 따라서 『高麗史』 찬자들이 권한공을 유교적 선악의 기준에 따라 간신전에 넣으려는 것에 대해 그의 후손들도 방관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막을 현실적인 힘이 없었던 것 같다.

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여전했으며 세간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권한공의 세평의 변화를 보건대 그는 처음부터 간신은 아니었고, 고려말 조선초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가 조선 세종대부터 점차 성리학적 사서의 편찬과 함께 '간신이 되었다' 또는 '간신으로 평가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5. 맺음말

권한공은『高麗史』간신전에 들어갔고, 조선후기에 편찬된『여사제강』,『동국통감』,『동사강목』등 고려 왕조를 서술한 여러 역사서에서도 임금을 배반한 간신으로 묘사되었다. 그가 간신으로 평가된 것은 충숙왕대에 심왕을 옹립하는 데 주도한 적이 있었고, 충혜왕이 원에 잡혀가자 충혜왕의 선처를 위한 탄원 운동을 하자는 제의를 냉정하게 거절한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권한공은 살아서 뿐 아니라 사후에도 그를 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 원로이고, 최고의 관직을 지냈으며, 학문이 높고, 자손까지 번창한 인물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권한공에 관한 세평을 담은 기록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건대, 그는 충숙왕이 복위한 뒤에 최고관직인 정승을 지냈고, 이부의 후신인 총부의 판사를 지내 수상이 되었으며, 70세가 지나서도 치사직 대신에 봉군호를 받아 현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혜를 누렸다. 또한 권한공은 이색이 많은 집안의 딸들을 물리치고 손녀를 선택할 만큼 명망이 있었으며, 권단의 여러 문생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명사로 거론되었다. 권한공의 내외 손자녀들이 그를 공통조상으로 인식하여 만든 사촌회는 당대 권한공의 후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임을 알려준다. 다만 이 시기에 권한공에 관한 기록은 그의 손녀사위인 이색이나 이색의 문생인 권근이 지은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조선초에도 권한공의 명성은 지속되었다. 태조 이성계는 충숙왕과 권한공

의 교류를 비유하여 자신과 정도전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할 정도였다. 조선초에 편찬된 지방지에서도 권한공은 본관인 안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록되었다. 세종 초년에 제작된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의 안동 인물조에는 권한공이 들어 있었으니 당시 안동 사람들이 자기 고을 출신 가운데 뛰어난 활약을 한 인물로 권한공을 손꼽았던 것이다. 이 내용이 들어간 사료는 권한공을 훌륭하게 묘사했던 이색의 글 등과는 달리 '공적인' 성격의 『태조실록』, 『지리서』 등이었다. 조선초에 권한공을 충숙왕과 충혜왕과의 관계 속에서 의리를 저버린 불충한 신하였다고 여겼다면 『태조실록』에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지리지의 인물조에도 넣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권한공은 세종대 전반까지 좋은 세평을 유지하였으나 문종대 간행된 『高麗史』 간신전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세종대부터 시작된 성리학적 역사 인식에 입각한 역사서의 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치평요람』에서 권한공은 '憸邪罔上之情'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편찬된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서도 권한공에 관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을 더 많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안동권씨를 대표하는 권부계와 권한공계 후손들 간에 미묘한 경쟁심도 작용했을 것이며, 세종대 이후 권근의 직계 자손들이 권력의 핵심에서 활약하는 반면에 권한공의 직계로는 권중화를 제외하고는 고위 관직에 오르는 자가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상에서 고려말・조선초 권한공의 세평 변화를 고찰한 결과, 권한공은 원래 간신이었다기 보다는 세종 후반기 이후 일련의 역사서의 편찬 과정에서 '간신이 되었다' 또는 '간신으로 평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증거의 하나가 『高麗史』 간신전에 들어간 권한공이 권단전에서는 문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충혜왕을 구원하기 위한 논의에서 최고의 국가 원로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하는 모순을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권한공이 간신전에 들어간 이유는 여전히 분명하게 해명되지 못하였다. 향후 권한공・권중화・권중달 등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고, 권한공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여 상호 비교하는 방식의 실증적인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慶尙道地理志』, 『高麗史』, 『高麗史節要』, 『淡庵逸集』, 『東文選』, 『牧隱集』, 『成化安東權氏世譜』, 『世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續撰八道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陽村集』, 『一齋先生實紀』, 『拙藁千百』, 『太祖實錄』, 『浩亭集』.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金龍善 편, 『高麗墓誌銘集成』(제5판), 한림대 출판부, 2012.
백문보, 원주용 옮김, 『담암일집』, 한국고전번역원, 2012.
이진한 편, 『拙藁千百 역주』, 경인문화사, 2015.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全國地理志(壹)』 亞細亞文化社, 1983.

金慶洙, 「治平要覽에 대한 연구」, 『湖西史學』 제21·22합집, 호서사학회, 1994, 1-48면.
김난옥, 「『高麗史節要』 卒記의 기재방식과 성격」, 『韓國史學報』 제48호, 고려사학회, 2012, 71-106면.
金塘澤, 「高麗 忠肅王代의 瀋王 옹립 운동」, 『歷史學硏究』 제12호, 전남사학회, 1993, 355-384면.
_____, 「忠惠王과 元과의 갈등」, 『歷史學報』 제142호, 역사학회, 1994, 1-27면.
_____, 『元干涉下의 高麗政治史』, 一潮閣, 1998.
김창현, 「고려말 신돈정권과 영남」, 『지역과 역사』 제18호, 부경역사연구소, 2006, 149-181면.
_____, 『고려후기 정치사』, 景仁文化社, 2017.
김광철, 「여말선초 세족층의 동향」, 『釜山史學』 제35호, 부산사학회, 1998, 27-68면.
金炯秀, 「權仲和開國原從功臣錄券에 대한 일검토」,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247-279면.
閔賢九, 「高麗後期 安東權氏 家門의 展開—元干涉期의 政治的 位相을 중심으로—」, 『道山學報』 제5호, 도산학회, 1996, 23-46면.
박용운, 「고려시대의 門下侍中에 대한 검토」, 『震檀學報』 제85호, 진단학회, 1998, 1-61면.
_____, 「高麗時代의 6部判事制에 대한 考察」, 『고려시대연구』 I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a, 1-110면.
_____, 『高麗時代 尙書省 硏究』, 景仁文化社, 2000b.
_____, 『高麗時代 中書門下省宰臣 硏究』, 一志社, 2000c.
_____, 「安東權氏의 사례를 통해 본 高麗社會의 一斷面—'成化譜'를 참고로 하여—」, 『歷史敎育』 제95호, 역사교육연구회, 2005, 35-86면.
_____, 『고려시기 역사의 몇가지 문제』, 일지사, 2010.
朴胤珍, 「『高麗史』 叛逆傳 立傳 기준과 고려말 조선초 '附元' 인식」, 『韓國史學報』 제52호, 고려사학회, 2013, 75-105면.
邊太燮, 『『高麗史』의 硏究』, 三英社, 1982.
徐仁源, 『朝鮮初期 地理志 硏究—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혜안, 2002.
신은제, 「『高麗史』 편찬 후 고려에 대한 기억」, 『한국중세사연구』 제23호, 한국중세사학회, 2007, 61-89면.

오항녕,『朝鮮初期 性理學과 歷史學—기억의 복원, 좌표의 성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李樹健,「高麗後期「土姓」硏究」,『東洋文化』제21・22합집, 대구대 동양문화연구소, 1981, 219-298면.
_____,『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李益柱,「14세기 전반 高麗・元關係와 政治勢力 動向—忠肅王代의 瀋王擁立運動을 중심으로—」,『한국중세사연구』제9호, 한국중세사학회, 2000, 137-174면.
李鍾書,「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 親族關係」,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李鎭漢,「『成化安東權氏世譜』에 기재된 고려후기의 관직」,『韓國史學報』제22호, 고려사학회, 2006, 271-301면.
_____,「高麗前期 致仕制의 운영과 官人의 引年致仕」,『民族文化硏究』제58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273-306면.
_____,「朝鮮時代 史書의 權漢功에 대한 서술과『一齋先生實紀』의 편찬」,『韓國史學報』제74호, 고려사학회, 2019, 131-169면.
李泰鎭,「15世紀 後半期「鉅族」과 名族意識—《東國輿地勝覽》 인물조의 분석을 통하여」,『韓國史論』제3호, 서울대 국사학과, 1976, 229-319면.
李弼相,「麗朝致仕考」,『惠庵 柳洪烈博士 華甲紀念論叢』, 探求堂, 1971.
張東翼,「權漢功의 生涯와 行蹟」,『大丘史學』제104호, 대구사학회, 2011a, 61-98면.
_____,「李齊賢, 權漢功 그리고 朱德潤—高麗後期 性理學 收容期의 人物에 대한 새로운 理解—」,『退溪學과 儒敎文化』제49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1b, 1-44면.
鄭仙姬,「高麗 忠肅王代 政治勢力의 性格」,『史學硏究』제42호, 한국사학회, 1990, 1-43면.
정재훈,「15세기 儒敎政治思想과 帝王學」,『조선전기 유교사상 연구』, 태학사, 2005.
韓永愚,『朝鮮前期 史學史 硏究』, 서울대 출판부, 1981.

【Abstract】

A Change in Reputation of Kwon Hangong between Late Goryeo Period and Early Joseon Period

Lee, Jin-Han*

Kwon Hangong (權漢功) was a prominent political figure who actively engaged in government affairs through the reign of six kings from King Chungryeol (忠烈王) to King Chungjeong (忠定王); however, later he was included in the chapter on disloyal servants in *Goryeosa (高麗史)*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Munjong (文宗) in Joseon Dynasty (朝鮮王朝), and came to be widely known as a disloyal man.

However, an examination of Kwon Hangong on whether he really engaged in disloyal activities and seen as a disloyal servant after death revealed that it was not so. He was sent on an exile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suk (忠肅王), and then appointed as an officer of the highest rank after receiving a pardon, and treated with respect as an elder politician. Furthermore, as a respected figure, he affected Lee Saek (李穡)'s decision on marriage even after death, and was known as the most prominent figure among pupils of Kwon Dan (權旦). Sachonhoe (四寸會) was a gathering of kin, consisting of Kwon Hangong's descendents and their spouses, centered around Kwon Hangong as a proud ancestor.

Even in Joseon Dynasty, King Taejo (太祖) remembered Kwon Hangong as an excellent man of letters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suk. In various jiriji (地理志)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世宗), Kwon Hangong was described as a representative figure of his family clan based in the county of Andong (安東). However, since the late period of King Sejong's reign, historical records based on a Neo-confucian view began to be published, which portrayed Kwon Hangong as a man who betrayed his king. Later he officially became a disloyal servant as he was included in the chapter on disloyal servants in *Goryeosa*.

These developments indicate that Kwon Hangong was not described negatively

*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

between late Goryeo period and the early period of King S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but came to be seen as a disloyal servant due to a historical perspective of those who published *Goryeosa* and portrayed so accordingly. That is, his reputation underwent a dramatic change from a respected and envied figure during his lifetime to a disloyal servant. Backgrounds to this change need be examined in a follow-up study.

Keywords: late Goryeo period, early Joseon period, Kwon Hangong, Reputation, Kwon family clan based in Andong, disloyal servant, *Goryeosa*, *Goryeosajeoryo*.

접수일: 2019.09.28.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01.